권총실내사격장 허가신청 안내 매뉴얼



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Guns & Explosives Safety Technology Association

【 목 차 】

1. 권총실내사격장 허가신청 안내 ····· 3

2. 권총실내사격장의 시설기준 안내 ····· 6

○ 2-1 권총실내사격장 시설설비 관련 참고자료 사진 ····· 8

3. 서식 ····· 13

4. 협회의 기술검토 의견서(신규 또는 변경 허가 신청시) ····· 14

5. 협회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완성검사 신청시) ····· 15

○ 붙임.1 사격장 허가신청서 ····· 16

○ 붙임.2 사격장의 위치 또는 주요 구조설비 변경허가 신청서 ·· 18

○ 붙임.3 안전진단 및 기술검토 신청서 ····· 20

○ 붙임.4 완성검사 신청서 ····· 21

1 권총실내사격장 허가신청 안내

□ 허가대상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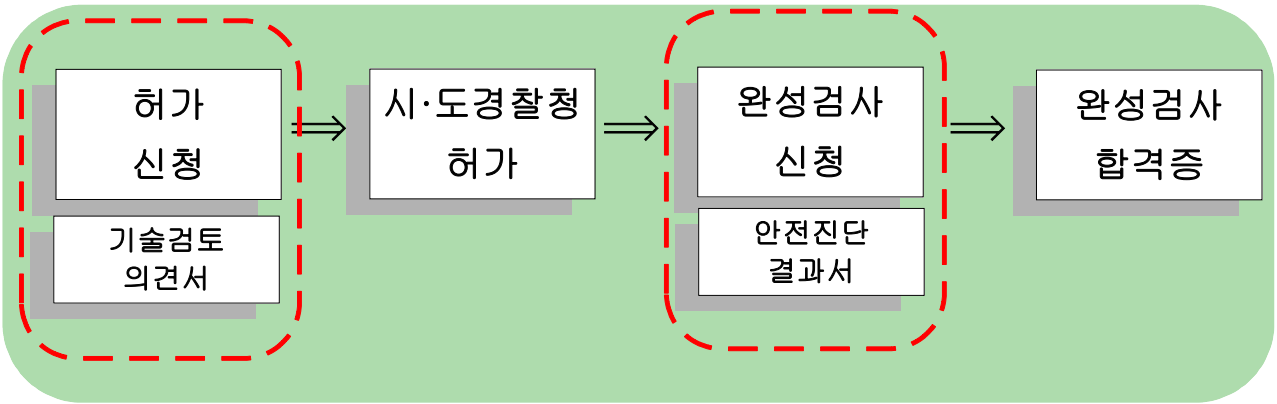
○ 권총실내사격장 신설

○ 권총실내사격장의 위치와 주요 구조 · 설비를 변경

□ 허가권자 (법 제6조)

○ 사격장 소재지 시·도경찰청장

□ 허가절차



○ **사격장을 하려는 자는 사격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완성검사에 합격하여야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음.**

○ **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 및 안전진단결과서는 허가관청의 요구시 제출**

□ 허가신청 서류 〔사격장 설치허가 신청서, 시행규칙 제2조〕

○ 신청 : 사업장 관할 시·도경찰청 생활안전(질서)과 총포담당자

○ 서식 : 사격장 설치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구비서류

1. 사격장 설치설계도 1부
2. 사격장의 위치 및 구조·설비 도면 1부
3. 사격장 주변 200미터 이내의 약도 1부
4. 사격장 관리규정 1부
5. 사격장에 갖추어 둘 총기 또는 석궁의 종류 및 수량 명세서 1부
6.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 변경 허가신청 서류 〔사격장 변경허가 신청 등, 시행규칙 제3조〕

○ 신청 : 사업장 관할 시·도경찰청 생활안전(질서)과 총포담당자

○ 서식 : 사격장의 위치 또는 주요 구조설비 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 구비서류

1. 사격장 변경설계도 1부
2. 주요구조·설비의 변경도면 1부
3. 사격장 주변 200미터 이내의 약도 1부
   (사격장의 위치가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
4.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되며, 사격장 위치가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
5. 사격장 설치허가증

□ 완성검사 (법 제10조, 시행규칙 제6조)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 설치허가 또는 사격장의 주요 구조설비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시설이나 설비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검사에 합격하기 전에는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신청 : 사업장 관할 시·도경찰청 생활안전(질서)과 총포담당자

○ 서식 : 사격장 시설 완성검사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2 권총실내사격장의 시설기준 안내

□ 관련법령(시행령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8 권총실내사격장)

- 권총실내사격장의 구조 · 설비 기준

구분	구조 · 설비
사좌	1. 사격선이 명확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직선일 것 2. 사대는 폭과 길이가 각각 1.2미터 이상일 것 3. 사대의 위치가 명확히 표시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수평일 것
사격실 내부	1. 천장 및 측벽과 바닥은 사좌로부터 사격방향 10미터까지는 두께 6밀리미터 이상의 철판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내탄성이 있는 재질로 하고, 그 밖에는 두께 5밀리미터 이상의 철판 또는 같은 정도의 내탄성이 있는 재질로 할 것 2. 천장 및 측벽과 바닥 등에 탄알이 튈 위험이 있는 부분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목재를 입히고, 그 목재는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맞도록 할 것 3. 바닥은 사좌로부터 사격방향으로 최소 2미터까지는 화약류 가루를 모을 수 있는 받침을 설치하여 1센티미터 이상의 물이 고여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화약류가 스며들지 않고 물청소가 쉬우며 탄알이 튈 위험이 없는 난연성 소재로 덮을 것 4. 사계 내에 창문이 없을 것 5. 총성이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하되, 방음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맞도록 할 것
표적 및 거리	1. 사격선과 표적의 거리는 15미터 이상 50미터 이하일 것 2. 표적은 사대와 바로 마주 보는 위치에 있을 것 3. 표적테는 탄알이 튈 위험이 없도록 되어 있을 것
탄알받이	1. 표적 뒤쪽에는 두께 10밀리미터 이상의 철판 등 내탄성이 잇는 재질의 탄알받이를 설치하고, 표적과 탄알받이 사이에는 두께 5밀리미터 이상의 난연성 고무판을 늘어뜨리는 등 탄이 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2. 탄알받이의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닿게 할 것

조명 및 전기설비	1. 야간에 사용하는 사격장에는 조준이 가능할 정도의 조명설비가 있을 것 2. 조명설비는 탄알에 의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는 위치에 있을 것 3. 표적 조작을 위한 모터, 조명스위치등 전기설비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격실 안에 설치하지 않을 것
소방시설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을 갖출 것
그 밖의 사항	1. 총을 손질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 것 2. 관람석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좌의 후방에 둘 것
폐쇄회로 텔레비젼	1. 사좌(射座) 2. 출입구 3. 총기격납고 4. 실탄저장소 5. 그 밖에 사격장의 안전을 위하여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

비고: 이 표에서 난연성 고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난연재료(難燃材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1 권총실내사격장 시설설비 관련 참고자료 사진

1. 사좌(예시)



(예시 - 사좌)



(예시 - 사좌)

○ 사격선이 명확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직선일 것

○ 사대는 폭과 길이가 각각 1.2미터 이상일 것

○ 사대의 위치가 명확히 표시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수평일 것

2. 사격실 내부(예시)



(예시 - 철판 두께)



(예시 - 측벽 내부 철판공사 모습)

○ 천장 및 측벽과 바닥은 사좌로부터 사격방향 10미터까지는 두께 6밀리미터 이상의 철판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내탄성이 있는 재질로 하고, 그 밖에는 두께 5밀리미터 이상의 철판 또는 같은 정도의 내탄성이 있는 재질로 할 것

2. 사격실 내부(예시)



(예시 - 수조)



(예시 - 수조)

○ 천장 및 측벽과 바닥 등에 탄알이 튈 위험이 있는 부분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목재를 입히고, 그 목재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맞도록 할 것

○ 바닥은 사좌로부터 사격방향으로 최소 2미터까지는 화약류 가루를 모을 수 있는 받침을 설치하여 1센티미터 이상의 물이 고여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화약류가 스며들지 않고 물청소가 쉬우며 탄알이 튈 위험이 없는 난연성 소재로 덮을 것

○ 사계 내에 창문이 없을 것

○ 총성이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하되, 방음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맞도록 할 것

3. 표적 및 거리(예시)



(예시 - 표적, 15m이상 50m이하에 설치)



(예시 - 표적, 15m이상 50m이하에 설치)

○ 사격선과 표적의 거리는 15미터 이상 50미터이하일 것

○ 표적은 사대와 바로 마주 보는 위치에 있을 것

○ 표적테는 탄알이 튈 위험이 없도록 되어 있을 것

4. 탄알받이(예시)



(예시 - 탄알받이)



(예시 - 난연성 고무판)



(예시 - 탄알받이 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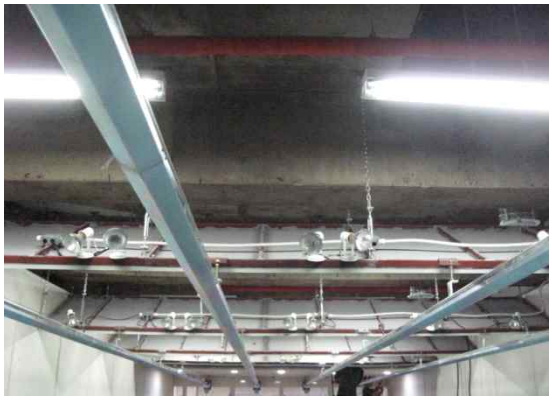
○ 표적 뒤쪽에는 두께 10밀리미터 이상의 철판 등 내탄성이 있는 재질의 탄알받이를 설치하고, 표적과 탄알받이 사이에는 두께 5밀리미터 이상의 난연성 고무판을 늘어뜨리는 등 탄이 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 탄알받이의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닿게 할 것

5. 조명설비(예시)



(예시 - 사대에서 표적방향으로 본 모습)



(예시 - 표적에서 사대방향으로 본 모습)

○ 야간에 사용하는 사격장에는 조준이 가능할 정도의 조명설비가 있을 것

○ 조명설비는 탄알에 의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는 위치에 있을 것

○ 표적 조작을 위한 모터, 조명스위치등 전기설비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격실 안에 설치하지 않을 것

6. 소방시설 등(예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1.11>

제 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확인한 결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직인

※ 알 림
이 증명서에 적힌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업 소 명		소 재 지		
사 업 자			업종	
규 모	구조 지상 층/지하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영업장 설치층: 층	사용면적: ㎡	구획된 실(룸)의 수: 개	

안 전 시 설 등 의 설 치 내 용

시 설 구 분	설 비 명	기 준 수 량	설 치 수 량	적 합 여 부
소 화 설 비	소화기			
	자동확산소화장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경 보 설 비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피 난 설 비	피난기구			
	피난유도선			
	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비 상 구	방화문			
	비상구			
영업장 내부통로와 창문	내부통로 폭	cm		
	창문크기	설치개수 개	창문크기 가로 cm× 세로 cm	
그 밖의 시설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피난안내도			
	피난안내 영상물			
실내 장식물 불연 화	사용재료:		설치면적:	
방 염	방염대상물품 사용 여부		물품명: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을 갖출 것

7. 그 밖의 사항(예시)



(예시 - 손질장소)



(예시 - 관람석)

○ 총을 손질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 것

○ 관람석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좌의 후방에 둘 것

6. 폐쇄회로 텔레비전(시행령 제2조3항)

1. 사좌(射座)
2. 출입구
3. 총기격납고
4. 실탄저장소
5. 그 밖에 사격장의 안전을 위하여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

4 서식

※ 사격장 허가 관련 서식은 협회 홈페이지(자료마당-서식다운로드-총포)에 있음.
https://www.gesta.or.kr/data/gun_list.php?kind=application_gun&kind_sub=list

※ 관련 법령은 협회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음.
https://www.gesta.or.kr/data/law01.php?kind=law

☐ **붙임 1. 사격장 설치허가 신청서**

☐ **붙임 2. 사격장 위치 또는 주요 구조설비 변경허가 신청서**

☐ **붙임 3. 안전진단 및 기술검토 신청서**

☐ **붙임 4. 사격장 시설 완성검사 신청서**

5 협회의 기술검토 의견서(신규 또는 변경 허가 신청시)

□ 협회 기술검토의견서

◇ 신청절차

1. 협회 홈페이지-자료마당-신청서-총포서식다운로드에서 안전진단 및 기술검토 신청서 내려받기

2. 기술검토에 체크하고 신청인등 내용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접수

3. 협회 총포안전처에서 접수 확인후 신청인과 기술검토 일정을 협의하여 사격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현장 방문하여 실사

4. 기술검토의견서를 문서로 받은 다음 사격장 허가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시·도경찰청 총포담당자에게 제출(사격장 신청서 구비서류 참조)

○ 협회의 기술검토는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8] 권총실내사격장의 기준에 따라 사격장 설계도면이 법적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 또는 사격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장소의 구조 및 설비가 적합한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여, 보완사항 등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허가 후 시설을 갖추도록 의견서를 문서로 발송함.

6 협회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완성검사 신청시)

□ 협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 신청절차

1. 협회 홈페이지-자료마당-신청서-총포서식다운로드에서 안전진단 및 기술검토 신청서 내려받기

2. 안전진단에 체크하고 신청인, 허가사항 등 내용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접수

3. 협회 총포안전처에서 접수 확인후 신청인과 안전진단 일정을 협의하여 허가받은 사격장 설치장소에 현장 방문하여 실사

4.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문서로 받은 다음 완성검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시·도경찰청 총포담당자에게 제출(완성검사의 신청 구비서류 참조)

○ 협회의 안전진단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8] 권총실내사격장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안전진단은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허가후 진행하므로 시설기준, 허가시 허가조건, 기술검토시 보완사항 등을 확인하여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결과보고서는 문서로 발송함.

붙임1 **사격장 설치허가 신청서**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2. 31.>

사격장 설치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완공 예정일		영업시작예정일 년 월 일
사격장의 명칭		
사격장의 종류		
사격장 설치 장소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격장 설치설계도 1부 2. 사격장의 위치 및 구조·설비 도면 1부 3. 사격장 주변 200미터 이내의 약도 1부 4. 사격장 관리규정 1부 5. 사격장에 갖추어 둘 총기 또는 석궁의 종류 및 수량 명세서 1부 6.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공기총·석궁 외: 20,000원 공기총·석궁: 1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작 성 방 법

※ 사격장관리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 관리자와 사용자의 관계

나. 종업원의 임무와 배치 계획

다. 위해(危害) 방지설비 명세와 그 관리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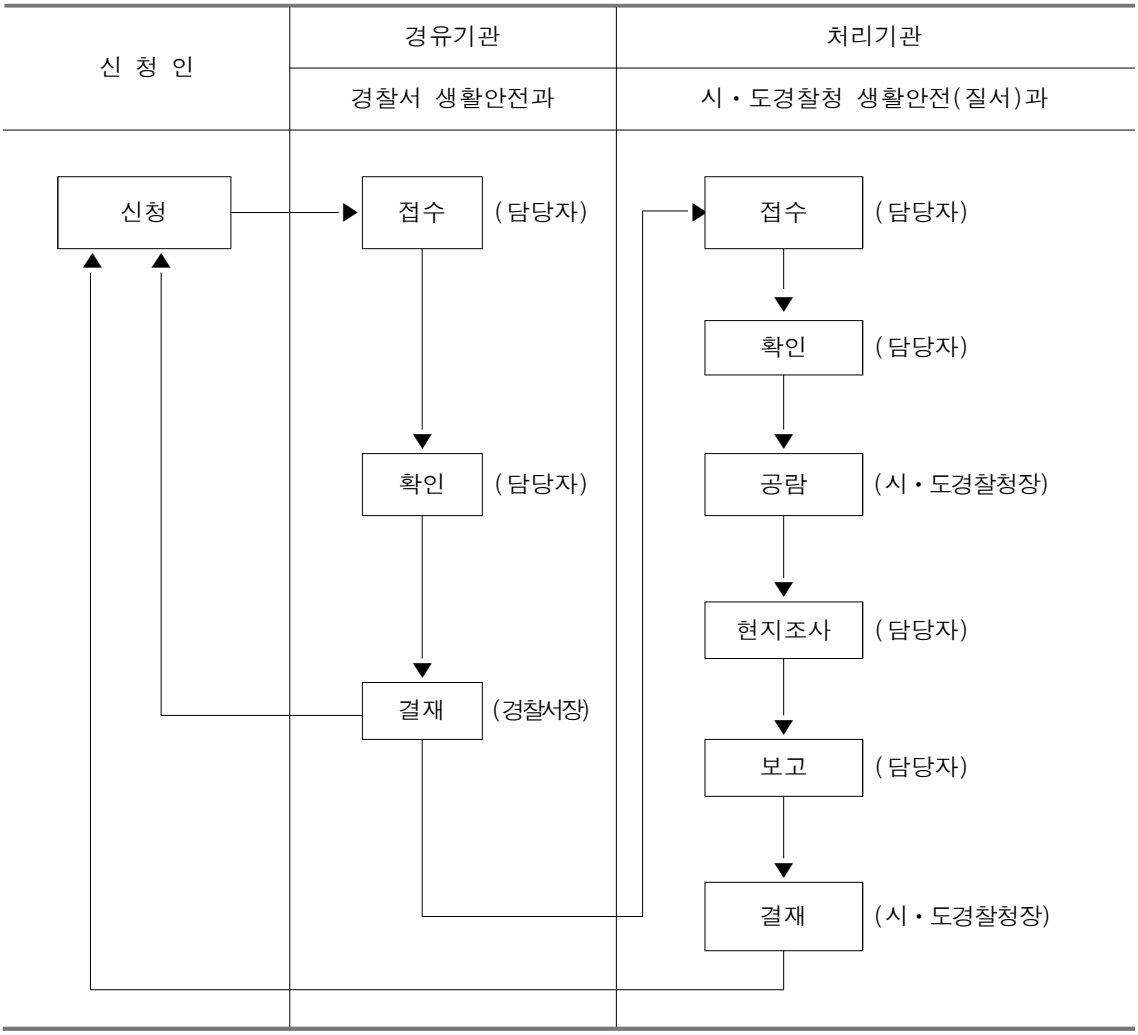
라. 사격장 사용자의 준수사항

마. 사용요금(시간단위, 게임단위, 총기·석궁의 단위 등으로 표시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붙임2 **사격장의 위치 또는 주요 구조설비 변경허가 신청서**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12. 31.>

사격장의 위치 또는 주요 구조설비 변경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 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허가사항	허가번호	
	사격장의 명칭 (전화번호:)	
	사격장 설치 장소	
	착공일 년 월 일	준공일 년 월 일
변경내용	항 목	
	변경 전	
	변경 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격장의 위치 또는 주요 구조설비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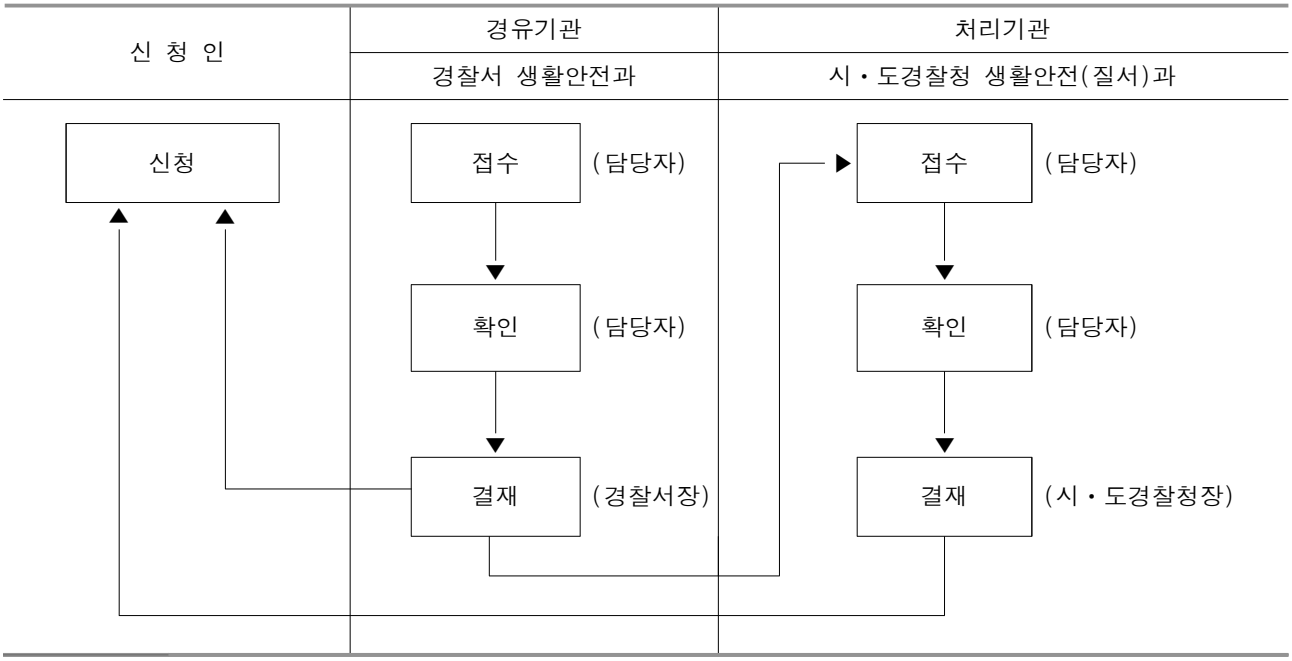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격장 변경설계도 1부 2. 주요 구조·설비의 변경 도면 1부. 3. 사격장 주변 200미터 이내의 약도 1부 4.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사격장 설치허가증 *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사격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8,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처 리 절 차


신 청 인
경유기관
경찰서 생활안전과
처리기관
시・도경찰청 생활안전(질서)과
신청
접수
(담당자)
확인
(담당자)
결재
(경찰서장)
접수
(담당자)
확인
(담당자)
결재
(시・도경찰청장)

붙임3 안전진단 및 기술검토 신청서

□ 기술검토 신청서 □ 안전진단	선결		지시		
	접수	일자		결재·공람	
		번호			
	처리부서	총포안전처			
	담 당 자				

① 신 청 인	성 명/회사명	(Tel: Fax:)
	주 소	(우편번호:)
② 시설의 종류		
③ 허 가 사 항		
④ 기 타		

* 위와 같이 시설(제조, 수리, 판매, 임대, 사격장)의 □ 기술검토 □ 안전진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이사장 귀하

※ 구비 서류
1. 허가증 1부
2. 기술지원비 입금 확인서 1부
   가. 계좌은행 : 하 나 은 행
   나. 계좌번호 : 168 - 910004 - 02804
   다. 계 좌 명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라. 수 수 료 : 제조업소[825,000원(부가세 포함)], 수리, 판매, 임대업소[385,000원(부가세 포함)]
   사격장[종목당 495,000원(부가세 포함)]

* 홈페이지 WWW.GESTA.OR.KR
TEL : 02-3272-4102
FAX : 02-3272-4101

붙임4 **완성검사 신청서**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12. 31.>

사격장 시설 완성검사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격장 명칭	(전화번호:)	
사격장 위치		
허 가 번 호		
사격장 시설의 내용		
검사받으려는 일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권총실내사격장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